

	규정심의위원회 규정		문서번호	5-1-1	
			제정일	2010. 02. 01.	
			개정일	2022. 02. 18.	
			페이지	1/2	관리 부서 기획처

제1조(목적)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구성) ① 규정심의위원회는 총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 한다.

1.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
 2.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 3.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간사는 기획처 직원 1명을 둔다.

제3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.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재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5조(심의사항)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상위법규 및 학칙에의 저촉 및 학내 다른 규정과의 상충 여부
2. 규정의 체제 및 형식
3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
4. 기타 총장이 위촉하는 사항

제6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규정심의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1		
		제정일	2010. 02. 01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기획처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